

서울특별시 광진구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위탁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의안 번호	1218
----------	------

제출일자: 2015. 11. 10.
제 출 자: 광진구청장

1. 의결주문

서울특별시 광진구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위탁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.

2. 개정이유

「사회복지사업법」 제34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1조의2에 따라 사회복지시설의 위탁기간을 구체화하고, 사회복지기관 실무자의 자질 향상을 위한 훈련 지원 등의 내용을 신설함으로써 민간 사회복지 활성화를 지원하고자 함.

3. 주요내용

가. 사회복지시설 위탁기간 구체화(안 제5조)

- 現, “위탁기간은 구청장이 별도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”

⇒ “위탁기간은 5년 이내에서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”로 개정

나. 민간 사회복지종사자 교육 지원 관련규정 신설(안 제7조제2항)

- 신설 : “구청장은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의 자질 향상을 위해 필요한 훈련과 교육 등을 지원할 수 있다”

4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「사회복지사업법」 제34조(사회복지시설의 설치)

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없음

다. 합 의 : 해당사항 없음

라. 기 타

(1) 신·구조문대비표 : 별첨

(2) 입법예고(2015. 10. 14. ~ 11. 2.) 결과 : 의견없음

(3) 규제심사 : 심사대상 규제사무 없음

서울특별시 광진구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위탁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서울특별시 광진구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위탁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5조 중 “구청장이 별도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”를 “5년 이내에서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”로 한다.

제7조 본문을 제1항으로 하고,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- ② 구청장은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의 자질 향상을 위해 필요한 훈련과 교육 등을 지원할 수 있다.

부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《신 · 구조문 대비표》

현 행	개 정 안
<p>제5조(위탁기간) 위탁기간은 <u>구청장이 별도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.</u></p> <p>제7조(지원) 구청장은 시설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탁자에게 보조할 수 있으며 위탁운영에 필요한 국·공유재산을 무상대여할 수 있다.</p> 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<u><신 설></u></p>	<p>제5조(위탁기간) --- <u>5년 이내에서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.</u></p> <p>제7조(지원) ① 구청장은 시설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탁자에게 보조할 수 있으며 위탁운영에 필요한 국·공유재산을 무상대여할 수 있다.</p> <p>② <u>구청장은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의 자질 향상을 위해 필요한 훈련과 교육 등을 지원할 수 있다.</u></p>

서울특별시 광진구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위탁운영에 관한
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

1. 비용발생 요인

-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훈련 및 교육비용

2. 미첨부 근거 규정

- 서울특별시 광진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14조제2항의 단서 규정 제1호에 해당 (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이거나,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3억원 미만인 경우)

3. 미첨부 사유

- 사회복지시설 종사자를 위한 훈련 및 교육 등에 필요한 최대비용 추측 결과 500만원 이하로 예상됨.

4. 작성자

복지정책과 복지자원팀 김지은

복지정책과장 강 성 구